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박수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828

발의연월일: 2024. 8. 14.

발 의 자: 박수현·황정아·위성락

이기헌 • 이개호 • 차지호

조인철 • 위성곤 • 김준형

박지혜 · 김재원 · 이건태

허성무 • 복기왕 • 정성호

김영배 • 이광희 • 송재봉

최민희 · 김기표 · 오세희

채현일 의원(2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지정문화유산의 훼손 시 국가는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, 통상 지정문화유산 복구 경비는 국비 70% 지방비 30%의 비율로 지원하며 일부 특수한 경우에만 국비 100%의 비율로 복구 비용을 지원함.

그러나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화재, 풍수해 등 자연재해로 예상치 못하게 지정문화유산이 훼손당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는데 이럴 경 우,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긴급하게 복구 비용 마련이 어려움.

이에, 화재·풍수해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훼손된 지정문화유산 복 구에 필요한 경비는 전액 국비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아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상관없이 국가 차원에서 지정문화유산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문화유산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(안 제51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5호의 경비는 전부를 보조하여야 한다.

5. 자연재해로 인하여 훼손된 지정문화유산의 복구에 필요한 경비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문화유산 복구 국고보조에 관한 적용례) 제51조제1항 단서 및
같은 항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자연재해로
인하여 지정문화유산의 복구가 필요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제51조(보조금) ① 국가는 다음 | 제51조(보조금) ① |
| 각 호의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| |
| 보조할 수 있다. <u><단서 신설></u> | |
| | 경비는 전부를 보조하여야 한 |
| | <u>다.</u> |
| 1. ~ 3. (생 략) | 1. ~ 3. (현행과 같음) |
| <u> <신 설></u> | 5. 자연재해로 인하여 훼손된 |
| | 지정문화유산의 복구에 필요 |
| | <u>한 경비</u> |
| ②・③ (생 략) | ②・③ (현행과 같음) |